도시경관과

【조 직】

【인력현황】

〔단위 : 명〕

구 분	계	4급	5급	6급	7급	8급	9급	임기제	비고
정 원	26		1	6	11	2	6		
현 원	24		1	5	11	3	4		

※ 육아휴직 1명(7급), 질병휴직 1명(7급) 미포함

【옥외광고물 허가 현황】

〔단위 : 개소〕

구분	계	벽면이용 간판	돌출	옥상	지주	교통수단 이용	기타
합 계	459	235	185	8	18	12	1
신 규	328	203	102	2	12	9	0
연 장	131	32	83	6	6	3	1

【위원회 현황】

〔단위 : 명〕

위원회명	위원장	구 성		기 능
		공무원	외부인사	
도시디자인위원회	부구청장	3	26	도시디자인 심의·자문
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심의위원회	부구청장	4	5	기금 운용관리 심의
미술작품 심의위원회	위원중 호선	-	98	미술작품 심의
광고물관리 및 디자인 심의위원회	도시환경국장	3	8	옥외광고물 심의

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

1. 마포구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수립

마포구 도시디자인 조례에 따라 마포구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을 사회·경제적 환경 변화에 맞게 재정비하여 마포구의 도시경관을 종합적·체계적으로 개선(관리) 하고자 함

▣ 사업개요

○ 추진목적 : 마포구 도시디자인의 중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고 구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의 기본으로 활용함으로써 마포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

○ 추진근거 : 「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6조,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도시디자인 조례」 제3조

○ 사업기간 : 2019. 1월 ~ 12월

○ 사업위치 : 마포구 전역(시간적 범위 10년)

○ 사업내용

- 마포구 도시디자인의 지역별 및 가로별 구축·관리 방안 수립
- 마포구 관내에 설치하는 공공공간(도로, 광장 등), 공공시설물(가로등, 버스정류장 등), 건축물, 옥외광고물, 야간경관 등 사업대상별 가이드라인 수립

▣ 세부추진계획

○ 2019. 1월~ 2월 : 학술용역 일상감사 및 입찰공고

○ 2019. 3월~ 12월 : 기본계획 수립 용역(10개월, 협상에 의한 계약)

○ 2019. 11월 : 도시디자인 위원회 심의(기본계획 수립 사항)

○ 2019. 12월 :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용역 준공

▣ 소요예산 : 154,000천원

○ 학술용역비 및 자문료 등(구비 100%)

2. 간판이 아름다운 망리단길 조성

도시경관과 주변환경을 저해하는 크고 작은 무질서한 간판을 정비하여 망리단길 문화디자인 거리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

▣ 사업개요

○ 사업기간 : 2019. 1월 ~ 11월

○ 사업구간 : 망리단길(포은로) 일대 (방울내로7길 ~ 포은로)

○ 사업규모

연도	사업구간	노선길이	점포수 (간판개선)	건물수
2019	망리단길(포은로) 일대 [방울내로7길 ~ 포은로]	1,700m	300	178

○ 사업내용

- 업소당 LED 간판 개선비용 250만원 지원(구비 40%, 시비 60%)
- 상인, 구의원, 전문가 등으로 간판개선위원회를 구성하여 자율정비

○ 추진근거 :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의3

▣ 세부추진계획

○ 2019. 2월 : 추진계획 수립

○ 2019. 4월 : 정비시범구역 지정 및 표시방법 고시

○ 2019. 5월 : 간판개선 주민위원회 구성 및 협약체결

○ 2019. 6월 ~ 9월 : 점포주 동의서 징구 및 마포구 광고물 심의

○ 2019. 9월 ~ 11월 : 간판 제작·설치 및 준공

▣ 소요예산 : 750,000천원

○ 옥외광고정비기금 300,000천원(40%), 시비 450,000천원(60%)

3.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 및 수거보상제 사업

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한 지속적인 정비와 주민참여형 수거보상제를 통해 일자리 창출 및 단속 효과를 높이고자 함

▣ 사업개요

○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반 편성·운영

- 평 일 : 2개반 4명
- 야 간 : 1개반 11명 (월 2회 정비)

○ 불법유동광고물(현수막/벽보·전단지) 수거보상제 실시

- 운영방법 : 동별 수거보상요원 수거량에 따라 보상금 지급
- 보상금 지급기준

현 수 막		벽 보	전단지(명함형)
일반형	족자형		
2,000원	1,000원	A3이상 장당 50원 A3미만 장당 30원	장당 20원
300만원/월 상한		40만원/월 상한	20만원/월 상한

- 지급근거 : 「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」 제28조 제2항

▣ 세부추진계획

○ 2019. 1월 : 수거보상제 계획 수립

○ 2019. 2월 : 수거보상요원 참여자 모집(동별 2명)

○ 2019. 3월 ~ 12월 : 수거보상제 실시

○ 2019. 1월 ~ 12월 :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 및 위반자 행정처분

▣ 소요예산 : 70,480천원

○ 옥외광고정비기금 40,000천원, 시비 30,480천원

4. 재난·재해 대비 취약광고물 안전관리

낙하위험이 있는 취약광고물을 대상으로 유관기관과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사전 안전점검 및 순찰강화로 재난·재해에 대비하고자 함

▣ 사업개요

○ 취약광고물 안전관리 대상 (총 470개소)

총계(건)	옥상간판	연면적 10㎡ 이상 대형광고물	돌출간판 (1㎡ 이상)	지주 (4m 이상)
470	21	114	327	8

○ 점검 시기

- 정기 점검 : 상반기(연1회)
- 긴급 점검 : 태풍 예보 시

○ 점 검 자 : 옥외광고협회 마포구지부 건축·전기 기술사·옥외광고사

○ 점검 방법 : 체크리스트에 의한 현장 점검

※ 옥외광고협회 마포구지부 재해방재단 (유관기관)
- 인력 현황 : 3개반 15명
- 활동 내용 : 태풍 등 발생 시 취약광고물에 대한 순찰활동 강화 및 응급조치
- 보유 장비 : 크레인(3대), 사다리(28개), 기타(안전모, 공구 등)

▣ 세부 추진계획

○ 2019. 3월 ~ 4월 : 취약광고물 안전점검 실시

○ 2019. 5월 : 안전점검 부적합 대상 시정 관리

▣ 소요예산 : 20,400천원

○ 옥외대형광고물 시설물 점검 및 재난방재 대응사업(기금 100%)

5. 위반건축물 발생예방 및 정비 계획

무단증축 사전예방 활동으로 위반건축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위반건축물에 대한 신속·지속적인 정비로 건전한 건축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함

▣ 사업개요

○ 사업기간 : 2019. 1월 ~ 12월(연중)

○ 추진근거 : 건축법 제79조, 제80조(이행강제금), 시행령 제115조

○ 사업대상 : 신고·허가없이 무단으로 증축한 위반건축물

○ 사업내용 : 무단증축 발생예방 활동, 위반건축물 행정조치 등

▣ 세부추진계획

○ 2019. 2월 : 위반건축물 지도·점검계획 수립

○ 2019. 3월 : 항공사진 판독 현지조사 계획 수립 및 현지조사 안내문 발송
위반건축물 발생 근절을 위한 홍보물 제작·배포

○ 2019. 3월 : 공정한 단속을 위한 자체 직무교육 실시

○ 2019. 3월 ~ 8월 : 항공사진 판독 현지조사 실시 및 결과보고

○ 2019. 6월 ~ 11월 : 과년도 미시정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

○ 2019. 8월 ~ 11월 : 항측조사 결과 위반건축물 행정조치 및 이행강제금 부과

○ 연중계속

- 홍보매체(마포소식지, 회의자료, 홍보물 등)를 통한 계도활동 실시
- 사용승인 건물 중심으로 위반건축물 동별 수시순찰 강화
- 위반건축물 자진정비 시정명령,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
- 위반건축물 데이터베이스 지속적 관리 및 감독

▣ 소요예산 : 16,100천원

○ 홍보물 제작, 단속물품 구입, 차량유지비 등(구비 100%)

건 축 과

【조 직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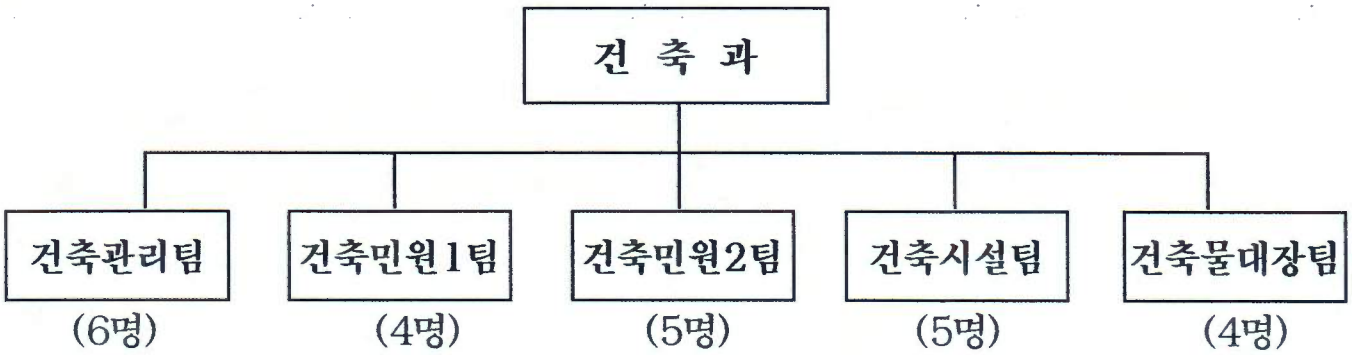

【인력현황】

구 분	계	4급	5급	6급	7급	8급	9급	임기제	비고
정 원	26		1	5	8	7	5		
현 원	24		1	9	9	3	2		

※ 공로연수 1명, 요양휴직 2명(8급 1, 시간선택제 9급 1) 미포함

【위원회 현황】

명 칭	위원수	위원장	구성	주요기능	근거
건축위원회	59	도시환경국장	대학교수, 구의원, 전문가 및 공무원	건축심의	건축법 제4조

【건축사 사무소 현황】

(2018. 10. 31. 기준, 단위:개소,명)

합 계		개인사무소		법인사무소	
사무소	건축사	사무소	건축사	사무소	건축사
228	241	138	138	90	103

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

1. 소규모건축물 재활용품 보관시설 설치사업

소규모 건축물 신축 시 재활용품 보관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, 도시 미관을 개선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

▣ 사업개요

○ 현황 및 문제점

- 소규모 건축물의 경우 대지내에 재활용품 보관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도로변 등에 쓰레기를 버려 미관 환경 저해 및 통행불편 있음

○ 사업내용 : 배치도에 재활용품보관시설 표기 후 건축허가

※ 2018. 10월 현재 160건 설치허가

○ 사업기간 : 2019. 1월 ~ 12월

○ 설치대상

- 다중주택·다가구주택 및 30세대 미만 공동주택
- 업무시설·판매시설·공장(연면적 1,000㎡ 미만), 기타 일반건축물

○ 관련근거

- 「마포구폐기물관리조례 시행규칙」 제3조제2항
- "소규모건축물 재활용품 보관시설 설치사업 추진" 방침(건축과-365호, 2018.1.5.)

▣ 세부추진계획

○ 2019. 1월 ~ : 건축허가 신청 건축물부터 시행

○ 추진방법

- 건축설계시부터 계획을 유도하여 건축허가 신청시 배치도에 표기(도로에 가깝고 입주민 이용 편리한 곳) 확인
- 사용승인 시 감리자가 제출한 사진 등을 확인 후 사용승인서 교부

▣ 소요예산 : 비예산